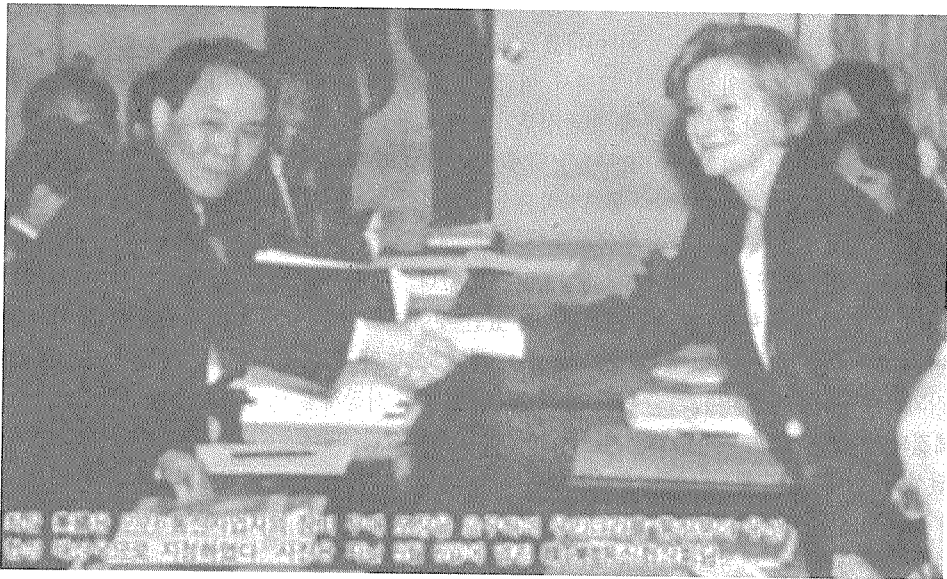


## 미국, 한국통신장비 우선 협상국 지정



통상문제로 또 다시 한·미양국이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대미 무역흑자가 적자로 바뀐 후 한동안 잠잠하던 두 나라간의 무역관계가 통신장비시장 문제로 냉각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미국은 통신장비와 관련해 한국을 1988년 종합무역법 Section 1374에 근거해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앞으로 미국 주도의 양자협상을 통해 흡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대한 무역제재조치까지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989년 이후 한국과 미국은 '한국통신'의 조달절차 및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개선, 첨단장비 조달 기회에 대한 내국민 대우, 미국 장비의 형식승인에 대한 일련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6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종합 무역법 Section 1377에 근거해 매년 이루어지는 재심에서 한국이 광범위

한 형식승인 조건, 영업비밀 보호 미흡, 국산화 정책 등을 통해 1992년 한-미 통신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국산 부품 사용율을 공식적으로는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불명확한 방법으로 미국 업체들의 입찰시도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USTR은 한국 통신시장에서 민간 통신업자들의 장비구매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개

입하지 않을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민간업자들의 구매과정에 대해 정부가 나설 수 없으며, WTO가 다자간 기본통신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양자간 협정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USTR은 매년 4월 1일 우선협대상국을 지정해 왔지만, 한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7월 1일로 연기한 바 있으며, 한국의 입장불변 고수와 서울과 워싱턴에서 있었던 2차례의 협상결렬로 결국 7월 25일 한국을 우선협대상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미국 1984년 종합무역법 Section 1375에 의하면 우선협대상국이 지정되면 30일 이내에 협상이 시작되어 1년간 진행되며, 협상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목적달성을 위해 무역제재를 비롯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경우 협상 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1년의 협상기간이 되기전에라도 보복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WTO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조치에는 무역제재, 미국 연방정부의 한국산 통신장비 구입 재정지원 중단 및 불매, GSP 혜택 중단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올해 1백억달러 이상)를 내면서 「왜 또 이러는가」하는 반응이다.

미국이 한국을 PFC로 지정하면서 까지 문제를 공식화하는 이유는 최근에 와서 미국의 통신장비가 한국에서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산 통신장비가 국제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팔리지 않는 것은 국산장비를 사용하라는 한국정부의 압력때문이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통신장비 시장에 한국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게 됐고 한국정부는 「통신장비시장은 민간의 문제로서 한국정부가 이에 개입한 적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펴 왔던 것이다.

통신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올초부터 시장개방 압력이 눈에 띄게 강해졌다. 미국은 「무역정책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사실상 국산품 구매정책을 실시하는 등 92년 한·미통신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통신에 관한 정부조달시장에서 미국업체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92년 한·미통신양해각서(ROU)에 대해서도 그 이행을 문제삼아 올 4월 이행을 재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런 외중에 미국은 새로운 제안을 하고 나섰다. 즉 민간통신업자의 장비조달, 외국인투자지분제한 철폐, 위성통신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관한 쌍무간협정을 체결

하자는 것이다. 한·미 두나라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이와 관련해 세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더이상 기다리지 못하게 된 미국정부는 88년 미통상법 1374조(통신무역법)에 의해 한국을 PFC로 지정함으로써 통신장비를 공식현안으로 등장시켰다.

바세프스키 USTR대표는 7월 26일의 발표문에서 「민간의 통신장비 조달에 정부의 불개입, 통신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 투명성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협상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무역흑자에 비취볼 때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시장개방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한국의 통신장비 시장이 미국보다는 닫혀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정부가 통신장비에 관한 양자협정 체결을 꺼리는 이유는 두가지다. 이미 국제규범이 있어 양자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고, 양자협정을 맺으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7조는 민간교역과 정부기업의 영업활동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협정이 불필요하고 만일 한국정부가 개입하면 GATT 규범에 위배되어 미국이 세계무역

기구(WTO)에 제소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설명이다.

만일 양자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장비에 관해 양국간에 무역마찰이 발생하면 WTO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양자협정을 맺으면 양국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WTO의 분쟁해결 절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WTO의 분쟁해결을 거치기도 전에 미국이 미국내 법에 의해 심판을 내릴 것이고 이 경우 한국에 불리한 판정이 내려질 것은 불보듯 하다는 얘기다. 미·일간 반도체협정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등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통신장비 등에 관해 미국과 쌍무협정을 맺은 예가 없다고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한국기업이 코드분할방식이동통신(CDMA) 기술을 개발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동전화에 대한 기술이 없었던 때는 이동전화 장비시장이 미국기업의 독무대였다. 교환시스템·기지국장비 등 모든 것을 미국에서

신규 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기기 수요 전망(1996~2000)

(단위 : 억원)

			장 비	단 말 기	계
P	C	S	18,088	11,232	29,320
T	R	S	3,232	3,568	6,800
CT	-	2	6,776	4,000	10,776
무 선 태 이 터			360	264	624
무 선 호 출			768	432	1,200
계			29,224	19,496	48,720

자료 : 정보통신부

사와야 했다. 전화기 시장만 일부를 미국과 한국기업이 분점하는 상태였다.

그러던 것이 CDMA의 개발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통신장비를 미국에서 사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태국에서의 통신시설 입찰에 미국과 가격을 놓고 경쟁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미국이 이번 건을 양국간 공식현안으로 삼은데는 미국이 선점한 통신시장에서 한국의 부상을 저지함으로써 세계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을 저지한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장비와 관련된 양국간 마찰은 쉽게 해소될 것 같지가 않다. 지금부터 미국의 통상압력과 무역제재 조치를 가산하여 대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도 미국이 힘을 배경으로 몰아 붙이는 싸움을 한국이 국제규범이라는 무기 한 자루로 외롭게 싸워야 할 상황이다.

통신장비와 관련한 이번 마찰은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의 압력을 얼마나 굳세게 버텨 내느냐가 관건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한국이 「지킬 약속」에 대해 진솔하게 미국을 설득하느냐다.

한편, 업계는 선진업체와의 적극적인 M&A 또는 전략적 제휴를 모색함으로써 핵심기술의 습득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선진국의 원천기술과 국내생산 기술의 조화를 통한 공동연구의 추진으로 국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